

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		나. 주요골자 ○ 제명 개정 - "비용변상"을 "실비보상"으로 개정 ○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관련조항을 정리
의안 번호	954	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김태호) 가. 비용변상을 실비보상으로 개정 ○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 정당한 공무집행에 따라 소요된 경비를 충당해 주는 것은 실비보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한 것으로 생각함. 나. 일비는 출석수당 등으로 개정 ○ 예산용어상 일비란 회의참석 또는 출장에 따른 소요되는 1일 경비를 말하므로 위원이 출석하여 안건을 검토하는 건에 비추어 출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.
1. 주문	제안년월일 : 2001년 9월 13일 제안자 : 윤영위 원장	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 5. 토론요지 : 없음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가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 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 거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세입·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,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·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,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추가경정예산,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 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구성한다.	나. 위원수는 33인 이하로 하며, 활동기간은 2001년 10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 지로 한다.	
나. 위원수는 33인 이하로 하며, 활동기간은 2001년 10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 지로 한다.		
2. 제안이유	예산안 및 결산심사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 한 시간을 가지고 정보교환과 자료수집 활 동을 함으로써, 예산안 및 결산심사의 효율 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로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.	
.....		서울특별시 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의안 번호	922	2001년 9월 일 행정자치위원회
1. 심사경과	2001년 9월 일 행정자치위원회	1. 심사경과
가. 제안자 및 제안일자 : 2001년 8월 20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		가. 제안자 및 제안일자 : 2001년 8월 20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
나. 회부일자 : 2001년 8월 22일		나. 회부일자 : 2001년 8월 22일
다. 상정일자 :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(2001년 9월 4일 상정 의결)		다. 상정일자 :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(2001년 9월 4일 상정 의결)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김건진)		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김건진)
가. 제안이유 ○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		가. 제안이유 ○ 현재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를 제외한 시세 의 부과징수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고 있으나 체납시 세징수제고를 위하여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징수코자 함.
		나. 주요골자 ○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중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체납한자의 시세는 시장이 직접